

●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21호

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(3차) 승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54호(2021.9.10.)로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(3차)을 승인,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(031-5189-2405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(031-228-01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2년 12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□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나.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

다. 면 적 : 101,951㎡

라.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, 청년·신혼부부·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)

가. 명 칭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나. 소재지(변경없음)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다. 대표자 성명(변경)

- 기정 : 김현준
- 변경 : 이한준

3.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(변경)

가. 사업 시행기간(변경)

- 기정 : 2016. 12. 30.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2. 12. 31.(준공예정일)
- 변경 : 2016. 12. 30.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3. 4. 30.(준공예정일)

나.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

4.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